








3. 위험물의 분류


3.1 제1급 - 화약류

등 급	설 명	견본 표찰
등급 1.1	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 및 제품	
등급 1.2	분출 위험성은 있지만,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	
등급 1.3	화재 위험성이 있고, 또한 약한 폭발 위험성이나 약한 분출 위험성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의 위험성은 있지만,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	
등급 1.4	심각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	
등급 1.5	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	
등급 1.6	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극도로 둔감한 제품	





3.2 제2급 - 가스류

등 급	설 명	견본 표찰
제2.1급 - 인화성 가스	20℃, 101.3 kPa에서 다음과 같은 가스 : 1) 공기와 13부피% 이하로 혼합되었을 때에 발화될 수 있는 가스 ; 또는 2) 인화 하한치(LFL)와 상관없이, 인화 상한치와 인화 하한치의 차이가 12% 이상인 가스.	
제2.2급 - 비인화성 · 비독성 가스	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 가스 : 1) 질식성 ; 2) 산화성 ; 또는 3) 다른 급에 속하지 않는 특성	
제2.3급 - 독성가스	1) 인간의 건강을 해칠 만큼 인체에 독성이나 부식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스 ; 또는 2) 급성흡입독성 반수치사농도값(LC ₅₀)이 5,000 mL/m ³ (ppm) 이하이기 때문에 인체에 독성이나 부식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	



3.3 제3급 - 인화성 액체

종류	설 명	건본 표찰
인화성 액체	1) 인화점이 60℃ 이하인 액체, 액체 혼합물 또는 고체가 용해되어 있거나 현탁되어 있는 상태의 액체 ; 2) 자신의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 ; 또는 3) 고온에서 액체상태로 운송되는 물질로서, 최고 운송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물질	
액체 둔감화 화약류	화약의 폭발성을 억제하기 위해 물이나 그 밖의 액체물질에 용해 또는 현탁(懸濁)시켜서 균일한 액체 혼합물을 형성시킨 폭발성 물질	



3.4 제4급 - 가연성 고체 ; 자연발화성 물질 ;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

등 급	설 명	건본 표찰
제4.1급 - 가연성 물질	다음과 같은 물질 : 1) 가연성 고체 ; 2) 자기반응성 물질 ; 및 3) 둔감화된 고체 화약류 ; 및 4) 중합성 물질	
제4.2급 - 자연 발화성 물질	다음과 같은 물질 : 1) 자연발화성 물질 ; 및 2 자기발열성 물질	
제4.3급 -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	물과 상호작용하여 자연적으로 인화성이 되거나 위험한 양의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기 쉬운 물질(물반응성 물질)	 


3.5 제5급 -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

등 급	설 명	건본 표찰
제5.1급 - 산화성 물질	물질 자체는 반드시 가연성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하여 다른 물질을 연소하게 하거나 연소를 돕는 물질	
제5.2급 - 유기과산화물	2가(二價)의 -O-O- 구조가 있고, 1개 또는 2개의 수소원자가 유기 래디컬로 치환된 것으로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유기물질	


3.6 제6급 - 독성 및 전염성 물질

등 급	설 명	건본 표찰
제6.1급 - 독성 물질	삼키거나, 흡입하거나, 피부 접촉 시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인체에 심각한 상해를 주거나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쉬운 물질	
제6.2급 - 전염성 물질	병원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물질	



3.7 제7급 - 방사성 물질

설 명	건본 표찰
위탁화물에 IMDG Code 제2.7.2.2.1항~제2.7.2.2.6항에 명시된 방사능 한도값 및 총방사능량 모두를 초과하는 방사성 핵종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	

3.8 제8급 - 부식성 물질

설 명	건본 표찰
피부에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키거나, 누출된 경우에는 다른 화물이나 운송수단을 현저하게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	

3.9 제9급 - 기타의 위험물 및 제품

종 류	설 명	건본 표찰
표찰 모형번호 9	운송 중 나타나는 위험성이 제1급부터 제8급까지에 속하지 않는 위험한 물질 또는 제품	
표찰 모형번호 9A	제품에 총 리튬함량이 2 g을 초과하는 리튬금속 배터리가 1개 이상 내장되거나 정격 와트-시가 100 Wh을 초과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1개 이상 내장된 포장화물이나 비포장된 제품에 부착 (본 표찰은 화물운송기구에 부착하는 대형표찰로 사용할 수 없음)	

- 표찰 모형번호 9A는 화물운송기구(예, 컨테이너)에 부착하는 대형표찰(placard)로 사용할 수 없음.

3.10 환경유해성 물질(수생환경)

설 명	건본 표찰
수생환경을 오염시키는 액체나 고체 및 그러한 물질의 용액 및 혼합물(제제 및 폐기물 포함)	